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24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 윤준병ㆍ허 영ㆍ박용갑

장철민 · 김태선 · 송옥주

정동영 · 서영교 · 주철현

박민규 · 강준현 · 이원택

허종식 • 박희승 • 박홍배

민병덕 • 김우영 • 신영대

의원(1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

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어촌 지역의 빈집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의 소유자는 빈집의 철거·개량 또는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제3 5조에 따른 지침고시에 따라 5년 단위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농어촌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6조).
- 마. 시·도지사는 농어촌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사.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 또는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 빈집의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아.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함(안 제17조).
-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차. 정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거나 빈집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이 법에 따른 인가 또는 지정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호 간에 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거·교육·교통·문화·환경 및 여가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 하.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125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126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 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란 농어촌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빈집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3. "농어촌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하 "빈집우선정비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4. "특정빈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농어촌 빈집을 말한다.
 - 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라.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자가 실시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홍보활동, 교육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농어촌 빈집의 적절한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하여 국민 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빈집의 소유자는 빈집의 철거·개량 또는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야 하고,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어촌 경관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

제5조(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지침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 1. 농어촌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 2. 농어촌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3. 농어촌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시행방법
- 4. 농어촌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 5. 농어촌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13조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농어촌 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9. 그 밖에 농어촌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 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 빈집 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농어촌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농어촌 빈집의 소재 현황
- 2. 농어촌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 3. 농어촌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 4. 농어촌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 5. 농어촌 빈집의 발생 사유 및 철거·개량 현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농어촌 빈집 출입)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어촌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

- 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 조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9조(농어촌 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 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 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

호를 포함한다)

- 2. 국세·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 제11조(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농어촌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2.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 도변경하는 방법
 - 3.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4. 농어촌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 제12조(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또는 지정하여 시행(이하 "사업시행자"라한다)할 수 있다.
 - 1. 농어촌 빈집 소유자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 촌공사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6.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 2.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빈집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제23조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본다.
- 제13조(농어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빈집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빈집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리의 일부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동 또는 리를 하나의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농어촌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 항에 따른 시행자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 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 제15조(농어촌 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1.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농어촌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 할 수 있다.
- ③ 농어촌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농어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촌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 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농어촌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농어촌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농어촌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공 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 빈집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6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

- 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변경인가(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11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9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고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빈집정 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또는 동의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특정빈집의 철거 조치 등

제21조(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농어촌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특정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빈집 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빈집 등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으로 인정되면 이를 특정빈집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제22조(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빈집 판정사실을 알리고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23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등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 소유자의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특정빈집 소유자가 특정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 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1. 특정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 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 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제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특정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 여야 한다.
- 제24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및 감면)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등 조치 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빈집정비기금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빈집정비기금

제25조(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18조의2제6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 은 전입금
-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
-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 2. 빈집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
-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 4. 특정빈집 철거등 조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 5.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
- 6. 그 밖에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 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이 공동으로 관리·운용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하는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 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제32조(기금 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② 기금의 지출은 제27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 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 제3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35조(농어촌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 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사항
 -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 빈집의 철거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 빈집 소유자의 적절한 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어촌 빈 집정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6조(인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 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 사정이 바뀌어 빈집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요 사항을 농립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의 철거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청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9조(농어촌 빈집정비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호 간에 빈 집정비사업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거·교육·교통·문화·환경 및 여가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빈집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빈집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1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빈집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4.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의 지정
 - 5.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 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 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 1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 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 사 시행의 승인
- 20.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2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 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8.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 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 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장 벌칙

- 제42조(벌칙)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과태료)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 거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 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 관련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2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빈집"으로 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 사업 시행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를"「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빈집

제3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